

서울특별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문성호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1534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4년 02월 01일
발 의 자: 문성호 의원(1명)
찬 성 자: 고광민, 김규남, 김용일,
김용호, 김종길, 김지향,
김형재, 김혜지, 민병주,
송경택, 신동원, 옥재은,
유만희, 이병윤, 이상욱,
이종배, 이종태, 최민규,
허·훈 의원(19명)

1. 제안이유

- 수학여행은 학생의 독립심 및 협동심을 기르고 농어촌 등 방문 지역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다는 순기능을 지니는 것에서 나아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. 이는 서울특별시의회 청소년의회에서도 거론된 바 있어 수학여행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고민의 필요성이 제기됨.
- 그러나, 최근 가정에서 수업일수의 일부를 현장체험학습으로 활용하여 국내외 여행을 떠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수학여행이 대체되고 있는 실정임. 이에 가정에서 국내외 여행이 어려운 학생의 경우,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 참여의 기회가 점차 줄어드는 것으로 보임.
- 따라서, 서울특별시교육청 도농교육교류협력의 일환으로 수학여행 활성화와 청소년 봉사단체 지원 등을 조례에 명시하여 적극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지역 간 현장체험학습 및 수학여행 활성화, 청소년 봉사단체 지원 등 지원 근거 명시함(안 제4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청소년기본법」, 「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, 「자원봉사활동 기본법」 「청소년기본법」, 「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, 「자원봉사활동 기본법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별첨)

다. 기타 : 신 구조문 대비표

서울특별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교육감은 학생들의 수요를 충족하는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- ③ 교육감은 지역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지역별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의 연계 및 활용 방안을 안내할 수 있다.

제5조제2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5. 지역별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 발굴 및 연계 지원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교육감의 책무) (생 략)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<u><신 설></u>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<u><신 설></u></p>	<p>제4조(교육감의 책무) ① (현행 제 목 외의 부분과 같음)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② <u>교육감은 학생들의 수요를 충족하는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</u>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③ <u>교육감은 지역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지역별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의 연계 및 활용 방안을 안내할 수 있다.</u></p>
<p>제5조(현장체험학습 지원계획) ① (생 략)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</p> <p style="padding-left: 40px;">1. ~ 4. (생 략)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<u><신 설></u>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5. (생 략)</p>	<p>제5조(현장체험학습 지원계획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② ----- -----.</p> <p style="padding-left: 40px;"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5. <u>지역별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 발굴 및 연계 지원</u>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6. (현행 제5호와 같음)</p>

서울특별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서울특별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5조(현장체험학습 지원계획)에 지역별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 발굴 및 연계 지원에 대하여 신설하는 내용으로 비용 발생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

3. 미첨부 사유

가.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(제3조제2항)

- 같은 조례안 제5조(현장체험학습 지원계획)는 지역별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 발굴 및 연계 지원에 대하여 신설하는 내용으로 비용 발생하지만, 현재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움

※ 서울시교육청은 소규모테마형교육지원센터를 통해 지역별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다양한 소식을 발굴하여 안내하고 있으나, 대규모 현장체험학습의 경우, 학부모(학생) 동의를 선행되어야 하는 등 연계 지원대상 및 범위에 대한 기술적인 추계에 어려움이 있음

〈서울시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 사업현황〉

사업명	사업내용	2024년 예산(천원)
	계	40,646
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수련교육	소규모테마형교육여행 종합지원센터운영	12,261
	청소년활동지도관리	28,385

※ 2024년 서울시교육청 예산서

4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

담당관 오희선

추계세제팀장 이정수

추계분석관 이홍래

☎ 02-2180-7952

e-mail : hong1004@seoul.go.kr

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.